

# 연맹기록보존위원회 운영규정

**제 1 조 (목적)** 본 위원회의 목적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(이하 “연맹”)의 각종 업무와 행사를 정리, 기록하고 지난 역사를 발굴, 기록 보존하여 후대에 전함은 물론 대내외 홍보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.

**제 2 조 (명칭)** 본 위원회의 명칭은 “기록보존위원회”라 칭한다.

## 제 3 조 (위원회 설치 및 근거)

- ① 본 위원회는 연맹 위원회 설치규정에 근거하여 발족하고 그 업무를 이행한다.
- ② 본 위원회는 연맹의 위원회 설치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.

## 제 4 조 (위원회의 업무 및 회의)

- ① 본 위원회의 업무는 연맹의 창립이후 발생한 포괄적인 역사기록과 자료 발굴, 정리를 주 업무로 한다.
- ② 본 위원회의 업무 목적상 필요한 경비는 연맹에서 지원한다.
- ③ 본 위원회의 위원장 혹은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, 협의 결과는 사무국에 전달한다.
- ④ 본 위원회의 소집일정 등은 업무상 필요위원에게 통지하여 해당 위원 및 자료 제출자, 증언자도 참석할 수 있다.

## 제 5 조 (위원의 구성 및 임명)

- ①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, 부위원장, 편집장 외에 전문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자문위원, 검수위원 등을 추대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②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기타 직책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## 제 6 조 (위원의 임기 및 징계)

- ①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고, 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.
- ② 이사장은 위원장 및 위원에게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임 및 징계할 수 있다.

## 제 7 조 (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)

- ① 필요시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보고, 건의 할 수 있으며,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한다.
-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 규정 및 사회통념상 규정에 따른다.
- ③ 그럼에도 충돌 소지가 있는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## 부칙

**제 1 조 (시행일)**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. (2019년 12월 14일 이사회의 의결 시행)